

2014. 1. 24.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 안 자	비 고
1615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자	상정일자	의결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3	1.16	1.20	1.20	김현식 의원	

2. 제안 설명 요지 및 주요내용

①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축사육제한 규정이 오히려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일부 지역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서의 예외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7호)

- 관광특구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관광 특구 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제한 없이 가축 사육을 허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특구 내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다만,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내 축산 농가 및 관련 단체에서는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과 타 시군 사례 등을 살펴 충주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음.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제한은 축산농가 뿐 아니라 충주시 생활 환경 등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으로 향후 충주시에서는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최적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질의: 재래식 축산 농가 및 마을 내 기존 가축농가의 경우 신규사업장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여도 거리제한으로 신규 허가가 어려운 실정임,
신규허가의 경우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 축산농가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완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 되는데?

답변: 축산업 관계자 및 시민, 전문가 의견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 심사결과

①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